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서영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5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의료사고에서의 의료행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주체 중 하나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일부 자구를 보완 및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에게는 피의자 출석요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52조제4항 중 지방공소청장 부분을 삭제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2조제4항 중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 절차 등) ① 의료사 고로 인하여 「형 법」 제268조의 업 무상과실치사상죄 로 보건의료인이 입 건된 경우 시·도경 찰청장, <u>지방검찰청</u> <u>검사장</u>과 해당 사건 으로 입건된 보건의 료인 또는 해당 사 건의 환자등은 심의 위원회에 해당 의료 사고의 의료행위등 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및 중대한 과 실이 있는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심의를 신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 절차 등) ①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 ----- ----- -----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 절차 등) ① (개정안 과 같음)

청할 수 있다. 보건
의료인 또는 환자등
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
찰청장 또는 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심의신
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
하여 그 결과를 시
·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심의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그 기
간을 1회에 한정하

---. -----

----- 중(지
방공소청장의 경우
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 경우를 말한다)
인 -----
지방공소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
방공소청장-----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여 3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의위원장의 의
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
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
찰청장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
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 따라 심
의를 신청하거나 신
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
는 지방검찰청 검사
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

④ -----

-----시·도경
찰청장 또는 지방
공소청장-----

-----.

⑤ -----

-----지방공소청장-----

④ -----

-----시·도경
찰청장-----

-----.

⑤ (개정안과 같음)

규명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 감정서 등 의 자료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 ----- ----- -----, ----- ----- ----- -----. ⑥·⑦ (현행과 같 음)	⑥·⑦ (개정안과 같 음)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 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국민건 강보험공단이나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 도경찰청장 또는 <u>지 방검찰청 검사장</u>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심의를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
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
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
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
소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u>지방검찰청 검사장</u>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 <u>지방공소청장</u>----- ----- 중(지 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 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 다)인 ----- <u>지방공소 청장</u>-----.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 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③ -----

----- 지방공소
청장-----
-- . -----

-----.

④ -----

----- 시·도경찰청장 -----

-----.

⑤ -----

----- 지방공소청장 -----

-----.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	---